



▶ 2010. 2. 5.(금) 배포
▶ 총 2 쪽 (사진 없음)

보 도 자 료

▶ 종합상담센터 전화상담과장 한극석
▶ 전화상담과 신현국

T E L : 031-345-5222

E-MAIL : star5205@molab.go.kr

FAX : 031-344-1363

설 대비 체불임금 전화상담(☎1350) 오후 8시까지 !!

-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는 설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금품 조기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기로 하고 설전 동안 관련 전화상담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.
- 현재 지방노동(지)청에서는 다가오는 설을 대비하여 설전 3주간(1.18~2.12)을 『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』으로 설정하고,
 - ‘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’을 운영하고 있어 이와 연계하여 종합상담센터에서도 전화상담을 평소보다 2시간 연장하여 설을 앞둔 체불근로자들의 신속한 청산을 위한 전화상담 활동을 강화한다.
- 전화상담 활동은 주로 체불 발생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체당금 지급과 생계비 대부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상담 처리하고
 - 사업주 도피 등으로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무료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안내하는 등 설을 앞둔 체불근로자들의 체불금품 조기해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.

- * 체당금: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·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·퇴직금 및 휴업수당
- * 생계비 대부 : 1개월 이상 체불발생 사업장의 재직근로자에게 무보증으로 700만원을 한도로 대부

체불임금 관련해서는 노동부 지방관서 및 종합상담센터(☎1350)
 생계비 대부제도는 근로복지공단 지역지사(☎1588-0075)
 민사소송 무료법률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에 문의

□ 참고로 지난 한해 공무원 24명 등 상담사 36명이 금품체불 등 노동기준분야의 상담 74만건을 수신하여 이중 53%인 40만건의 금품체불 상담을 수행한바 있다.

구 분		총계	노동기준분야	고용분야	외국인상담
'09.12월	월	130,731	64,214	65,722	795
	누계	1,734,586	742,382	983,051	9,153

○ 상담비중 : 금품체불 53%, 해고 9%, 휴일휴가 9%, 근로시간 3%, 산업안전, 고용평등 등 기타문의 26%